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조직 및 연계협력 방안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al Organization and Connective Cooperation Plans of a Regional Central Library -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

윤 희 윤(Hee-Yoon Yoon)**
김 신 영(Sin-Young Kim)***

< 목 차 >

I. 서론	III. 대구 대표도서관의 운영조직 및 연계 협력 방안
II. 대구 대표도서관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기능	1. 운영조직 구성 모형
1. 비전과 전략적 목표	2. 지역도서관 연계협력 방안
2. 업무와 핵심기능(역할)	IV. 요약 및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대구시가 2020년에 건립·운영할 대구 대표도서관의 운영조직 및 연계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대구 대표도서관의 비전은 대구 시민의 행복을 위한 도서관과 지식문화요람으로 설정하고 10가지 핵심기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법정 업무 및 핵심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영조직으로 총 5개과(행정지원과, 도서관정책과, 자료개발과, 정보서비스과, 공동보존과)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구 대표도서관 및 지역도서관의 연계협력 구축은 공공도서관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운영, 대구 공동보존서고 구축을 위한 연계협력, 도서관 ILL/DDS를 위한 협력시스템으로 나누어 각각 컨트롤 타워 및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도서관 정책, 도서관 협력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operational organization and connective cooperation plan for the Daegu regional central library which will be completed in 2020. The vision of regional central library was presented as 'the library for the happiness of Daegu citizens and the cradle of knowledge and culture', and 10 core functions also proposed. In order to fulfill the roles as a regional central library, it has been suggested to maintain 5 department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upport, the department of library policy, the department of collection development,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service, and the department of cooperative preservation. Lastly, it has also established the model of connective cooperation plans between other regional libraries and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as follows: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ooperative system, connective cooper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Daegu collaborative repository, cooperative library system of ILL/DDS.

Keywords: Regional central library, Public library, Library policy, Library cooperation

* 본 논문은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대구광역시, 2015)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제1저자)

*** 경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inyoung@kiu.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6년 8월 18일 •최초심사: 2016년 8월 30일 •게재확정: 2016년 9월 6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21-39,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9.21]

I. 서론

지난 2006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 제22조 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11년부터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립중앙도서관은 부지 및 규모, 시설 및 공간구조, 운영관리 측면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지 및 규모의 측면에서는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가 심하다. 자료수장 측면에서는 자체의 연차증가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서고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미래 장서증가에 대비하기 어렵고, 특히 법정 업무인 지역 도서관계를 위한 공동보존서고 기능을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이 모든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대표도서관인 시립중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도서관정책을 수립·집행하거나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종을 지원·협력하는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구시는 2015년 6월에 대구 대표도서관(가칭)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7월에 개최된 대표도서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남구 캠프워커 부지를 대표도서관 건립지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건립 자문위원회 운영, 대표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개설하여 시민의견을 청취하였다. 2020년에 개관할 예정인 대구 대표도서관은 대구시 도서관정책 수립·집행의 구심체, 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및 문화창조 산실,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공동체 문화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인문정신문화의 베이스캠프, 고품격 대구를 각인·홍보하는 지식관광명소로서의 복합적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교육학술 및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지식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구 대표도서관이 건립·운영될 경우를 대비하여 중장기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핵심기능과 역할모형을 제시하며, 조직 및 인력 중심의 운영방안과 대구 지역 공공도서관 및 다른 관종과 연계 협력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 자료(학술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정책문서, 웹정보자원, 통계데이터, 웹사이트 등)를 수집하여 국내외 지역대표도서관 및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을 분석하였으며, 지역대표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사례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도서관계, 문헌정보학계, 문화예술계, 행정 및 교육계 등)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대구 대표도서관

관 건립·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Ⅱ. 대구 대표도서관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기능

1. 비전과 전략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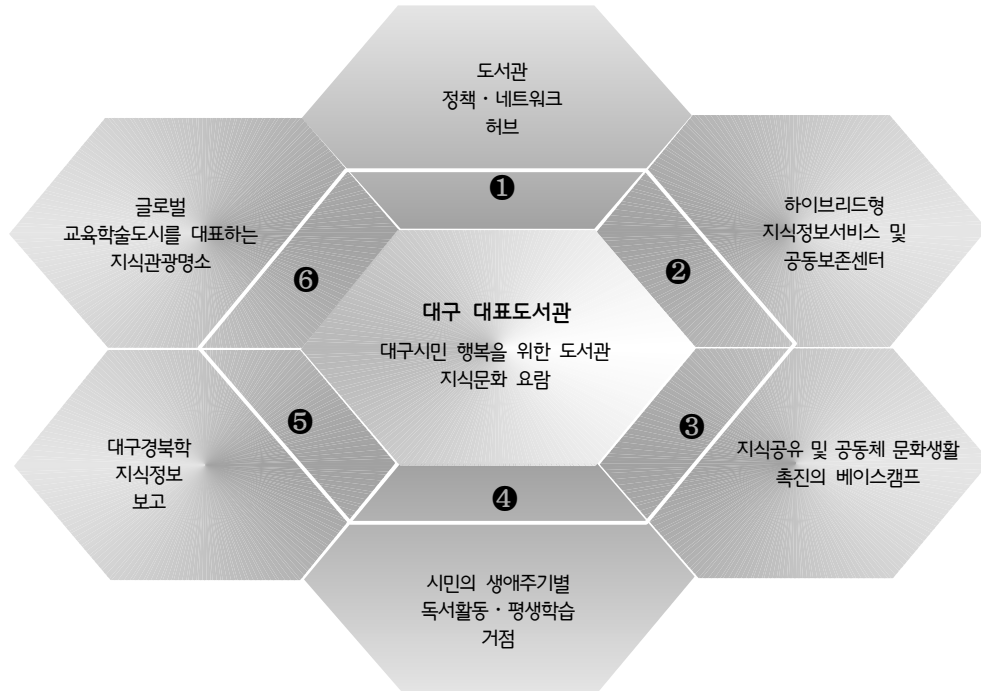
대구 대표도서관은 교육학술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시 지식정보문화를 총괄하는 최대 공공도서관인 동시에 8개 기초자치단체에 산재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을 위한 정책적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구 대표도서관이 대구시 전역에 산재하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관중을 아우르는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립하려면 법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비전과 핵심가치는 <표 1>에 제안한 바와 같이 순차적 및 확산형 파급효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표 1> 대구 대표도서관의 미래지향적 비전과 핵심가치

구 분		논거와 이유
비전	대구시민 행복을 위한 도서관 지식문화 요람	대구 대표도서관은 대구시에 산재하는 모든 도서관을 대표하는 법적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해야 함. 다만, 대구시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하므로 궁극적 지향성 및 존재이유는 대구시의 슬로건인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와 맥락을 함께 하므로 중장기 비전을 ‘대구시민 행복을 위한 도서관 지식문화 요람’으로 설정함
핵심가치	대구 지식정보문화 랜드마크	대구 대표도서관은 일차적으로 교육학술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의 시민을 위한 지식정보 수집·서비스 확대, 평생학습 및 문화향유서비스 강화, 공동체 문화를 촉진하는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에 주력해야 하며, 그 결과로 지식정보 인프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중장기적으로 ‘대구 지식정보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야 함
	한국 도서관 지식문화 정책 산실	대구 대표도서관이 ‘대구 지식정보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구 도서관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수립·집행기능 주도, 다른 도서관 지원·협력기능 강화, 공동보존서고 운영 등에 치중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전국적 인식효과를 ‘한국 도서관 지식문화정책 산실’로 파급시켜야 함
	지구촌 융합형 지식정보센터	대구 대표도서관의 양대 핵심가치인 ‘대구 지식정보문화 랜드마크’와 ‘한국 도서관 지식문화정책 산실’을 정당화하는 요체는 국내외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정보자료’를 전략적으로 개발·수용하고 무결성 보존관리에 치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집요한 노력을 통하여 ‘지구촌 지적 편린과 정신문화를 집적시킨 융합형 지식정보센터’로 부상해야 함

나아가 대구 대표도서관의 중장기 비전과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는 <그림 1>과 같이 6가지(도서관 정책·네트워크 허브, 하이브리드형 지식정보서비스 및 공동보존센터, 지식공유 및 공동체 문화생활 촉진의 베이스캠프, 시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활동·평생학습 거점, 대구경북학 지식정보의 산실과 보고, 글로벌 교육학술도시를 대표하는 지식관광명소)로 제안하였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3호)



<그림 1> 대구 대표도서관의 전략적 목표

2. 업무와 핵심기능(역할)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6가지 법정 업무(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의 보존,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른 제2항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매년 1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종합하여 보고해야 할 업무를 5가지(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내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가운데 총 12개 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 관련조례를 제정·적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조례에 규정된 지역대표도서관 업무를 발췌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시도별 지역대표도서관 관련조례에 규정된 소관업무

조례명	조항	소관업무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2007. 6. 30)	제6조	1. 법 제23조와 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의 업무 2.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3.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운영과 관련한 사항 4.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5. 그 밖에 지역 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2007. 8. 6)	제14조	1. 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내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정책개발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4.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사업 지원 및 도서관 근무 직원 직무향상 교육 5. 경기도대표도서관으로서 외국도서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 6. 그밖에 도내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7. 12. 14)	제44조	1.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지원 정책의 수립·조정 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이용의 이용 4.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5.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교류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문 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제공 8. 그 밖에 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2008. 3. 5)	제7조	1. 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도서관의 진흥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무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008. 11. 13)	제6조	●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운영조례 (2009. 3. 10)	제4조	1.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표도서관 업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업무 3.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운영과 관련된 업무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5.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09. 4. 3)	제6조	1. 법 제23조와 영 제15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의 업무 2.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4. 그 밖에 전라북도 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009. 4. 6)	제6조	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업무 2. 법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3.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0. 4. 15)	제7조	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도서관시행계획 수립·추진 2. 법 제23조와 영 제15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 업무 3.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 5.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3호)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 7. 8)	제6조	1. 법 제23조와 영 제15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의 업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4. 그 밖에 충청북도 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라남도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2011. 10. 20)	제6조	1.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업무 2. 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지역대표도서관 업무 3.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보존 및 제공업무 4.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 수행 5. 기타 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업무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2. 2. 2)	제5조 제2항	1. 법 제23조와 영 제15조 제2호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업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 4. 그 밖에 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편 일본에서는 도도부현립도서관¹⁾의 위상이 국내 지역대표도서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조례, 홈페이지, 연차보고서, 외부평가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사명, 목적, 책무, 역할, 기능 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일본 도도부현립도서관의 기능(사명, 역할 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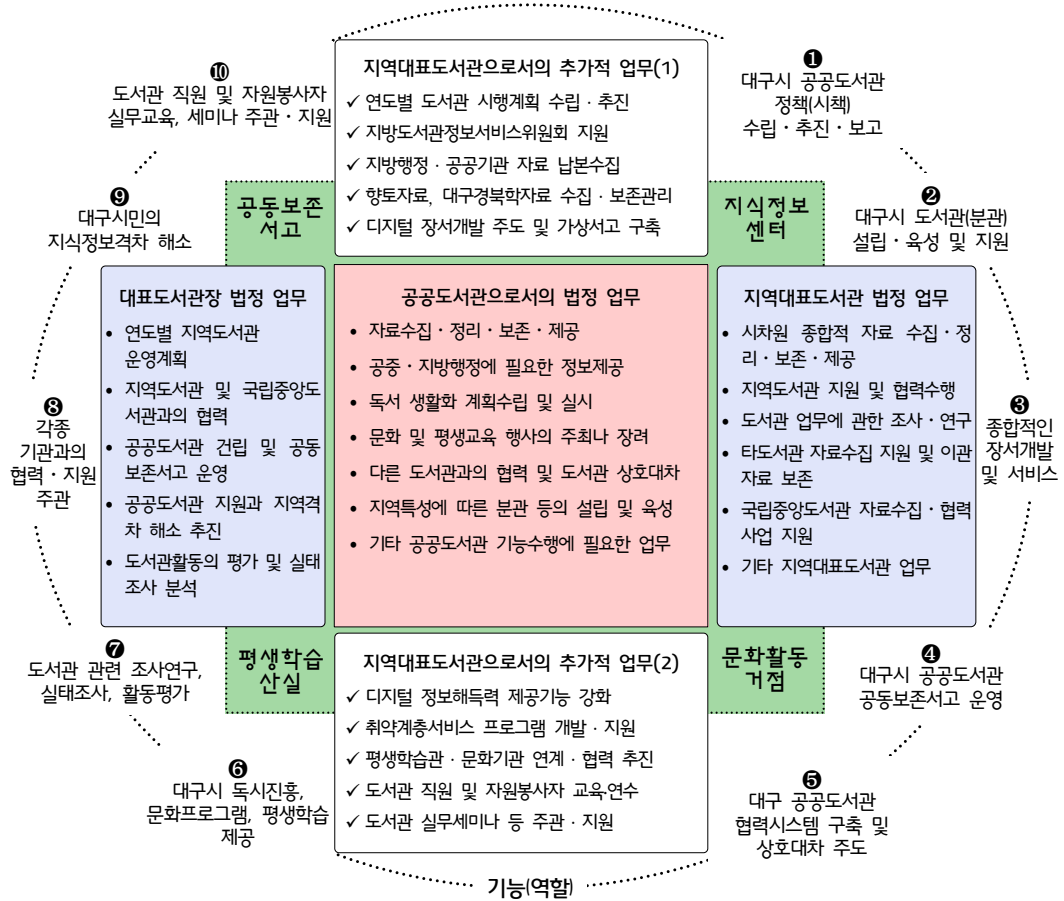
도서관	사명, 기능, 역할
도쿄도립 중앙도서관 (東京都立 中央圖書館)	1.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2. 지역주민의 학습, 조사, 연구활동 지원 3. 지역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및 지원 4. 도서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서비스 5. 자료보존 6. 국제교류협력
이와테 현립도서관 (岩手県立 図書館)	1. 자료의 수집, 보존, 제공 기능 2. 현민을 위한 정보자료의 열람, 제공기능(직접서비스) 3. 시정촌립도서관 등을 지원, 보완하는 기능(간접서비스) 4. 현민의 생애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기능
나라 현립도서관 (奈良県立 図書館)	1. 현내의 정보센터(선도적 측면) 2. 특정 분야의 전문도서관(지역적 측면) 3. 현내의 종합적 공공도서관(보완적 측면)
오카야마 현립도서관 (岡山県立 図書館)	1. 시정촌립도서관에 대한 지원 2. 내관자를 위한 직접서비스 3. 도서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서비스 4. 현지역 도서관네트워크 구성체 5. 자료보존센터

1) 일본은 한국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상당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총 47개(東京都, 北海道, 京都府, 大阪府, 43개 縣)이며, 일반적으로 도(都)와 부(府)는 자치행정을 주관하고 그 하위 행정단위인 구(区)는 실행기능을 수행함.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현(縣)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이 실무를 집행하며, 광역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총 62개 도도부현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음.

<p>이바라기 현립도서관 (茨城県立 図書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민에 개방형 서비스 제공 2. 시정촌과의 연대 및 지원 3. 참고서비스의 충실 4. 연수, 교류 및 발신서비스의 충실 5. 장서구축의 충실 6. 멀티미디어화, 네트워크화에의 대응 7. 조직 및 직원의 충실
<p>미야기 현립도서관 (宮城県 図書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적 역할 : 생애학습을 위한 거점시설로서의 자료센터, 조사상담센터, 상호협력센터, 아동봉사협력센터, 도서관연구센터 2. 새롭게 부과된 역할 : 지역사회의 '지식의 집적', '기억장치'로서 자신을 개발하는 공간, 현민 생애학습, 문화활동을 충분히 지원하는 거점, 현내 시정촌립도서관의 지역밀착형 도서관활동 지원 기관, 자료정보센터 3. 기대되는 새로운 기능 : 도서관 자료의 수집·보존·제공, 조사상담, 도서관 상호협력 지원, 현민 교류의 장
<p>오사카부립 중앙도서관 (大阪府立 中央図書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자료의 효과적인 수집과 보존 2. 충실한 참고서비스 3. 도서관 네트워크 시스템의 증추적 기능 4. 문화활동의 '장'의 제공 5. 신체장애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p>오오이타 현립도서관 (大分県立 図書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활동 지원 2. 모든 시정촌에 도서관을 개설하여 자력으로 도서관사업이 전개되도록 '일촌 1관 체제'의 확립을 위한 지원 3. 다양화, 고도화하는 현민 학습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계통적 자료수집 4. 현내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 기능의 상호보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5. 역사문화 및 현정부 프로젝트 등의 각종 현정부 정보를 영상 등의 방식으로 제공
<p>쿠마모토 현립도서관 (熊本県立 図書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애학습의 지원 2. 시정촌 지원 : 자료·정보, 참고봉사, 도서관운영, 도서관 미설치 시정촌 지원 3. 자료정보센터로서의 역할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료(향토자료, 행정자료, 시정촌도서관이 수집하지 않는 자료, 지방공공단체의 정책결정 및 행정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자료의 보존 4. 정보발신거점으로서의 역할 : 국내의 향토정보, 행정정보 등 적극적 수집·발신 5. 연락조정기능 : 현내의 여러 관공(시정촌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과의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연락조정 기능 수행. 또한 다른 도도부현립 및 국립국회도서관 등과의 연대, 협력함
<p>후쿠오카 현립도서관 (福岡県立 図書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수집 및 보존센터로서의 기능 2. 자료정보센터로서의 기능 3. 향토자료센터로서의 기능 4. 시정촌립 도서관활동의 원조센터로서의 기능 5. 아동독서활동 추진거점으로서의 기능
<p>돗토리 현립도서관 (鳥取県立 図書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들을 지원하는 도서관 2. 현의 정보거점으로서의 도서관 3. 일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서관 4. 현의 지역문화를 증시하는 도서관 5.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 6. 현 주민서비스를 창조하는 도서관

한일 양국의 지역대표도서관 법정 업무 분석결과를 대구 대표도서관에 적용하면 시내 전역에 산재하는 여러 공공도서관 중의 하나로서의 역할과 모든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관공을 아우르는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요컨대 대구 대표도서관은 개별 공공도서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기본적 업무 외에 거시적 계획수립, 지원협력서비스,

도서관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공동보존서고 운영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대구 대표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업무를 바탕으로 기능(역할)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대구 대표도서관의 업무 및 기능(역할) 모형

Ⅲ. 대구 대표도서관의 운영조직 및 연계협력 방안

1. 운영조직 구성 모형

대구 대표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구성 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근거로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직원 배치기준,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기준, 그리고 시도별 지역대표도서관의 직제 현황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는 공공도서관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표 4>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공립 공공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 포함)은 사서직 기본인력 3명에 기준면적(330㎡)과 기본장서(6천권)를 초과할 경우에는 각각 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각각 1명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조직모형, 관장 직급이나 사서직원 배치기준, 전체 직원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표 4> 공공도서관 사서직원의 배치기준

구분	배치기준
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

<표 5> 공공도서관 관장의 직급·자격·경력기준

서비스 대상인구(명)*	직급	관장 자격증 및 경력
5만 미만	6급	2급 정사서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
5만-10만 미만	6-5급	단, 5급 관장은 1급 정사서로서 1년 이상 관리경력 또는 2급 정사서로 7년 이상 실무경력
10만-30만 미만	5급	"
30만-50만 미만	5-4급	단, 4급 관장은 1급 정사서로서 3년 이상 관리경력
50만-100만 미만	4-3급	단, 3급 관장은 1급 정사서로서 5년 이상 관리경력
100만 이상	3급 이상	"

* 특별시·광역시·도·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구·군·읍·면의 전체 인구를 말한다.

다음으로 도서관 전문직단체를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서비스 대상인구 구간별 공공도서관 관장의 직급기준을 <표 5>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16개 광역시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의 지역대표도서관 중에서 서비스 대상인구가 50만 명-100만명 구간에 해당되는 강원과 제주의 대표도서관장은 3급-4급을, 나머지 시도의 대표도서관장은 3급 이상을 보임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에 배치해야 할 인력의 경우, <표 6>과 같이 '기본인력(사서) 20명 + 증원인력(서비스 대상인구 10만명당 사서 1명) + 기타 직원(사서의 1/3)'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표 6〉 공공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 직원의 배치기준

구분	공공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기본 인력	증원인력		기본 인력	증원인력	
사서직원		기타 직원	사서직원		기타 직원	
1만 미만*	3명 (사서직원 3명 또는 사서직원 2명과 기타 직원 1명)	인구 9천명당 1명	사서직원의 1/3을 추가 배치	사서 20명	인구 10만명당 1명	사서직원의 1/3 추가 배치
1만-2만 미만						
2만-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30만 미만						
30만-50만 미만						
50만 이상	인구 1만명당 1명					

* 서비스 대상인구가 1만명 미만인 작은도서관은 상근직원 1인 이상을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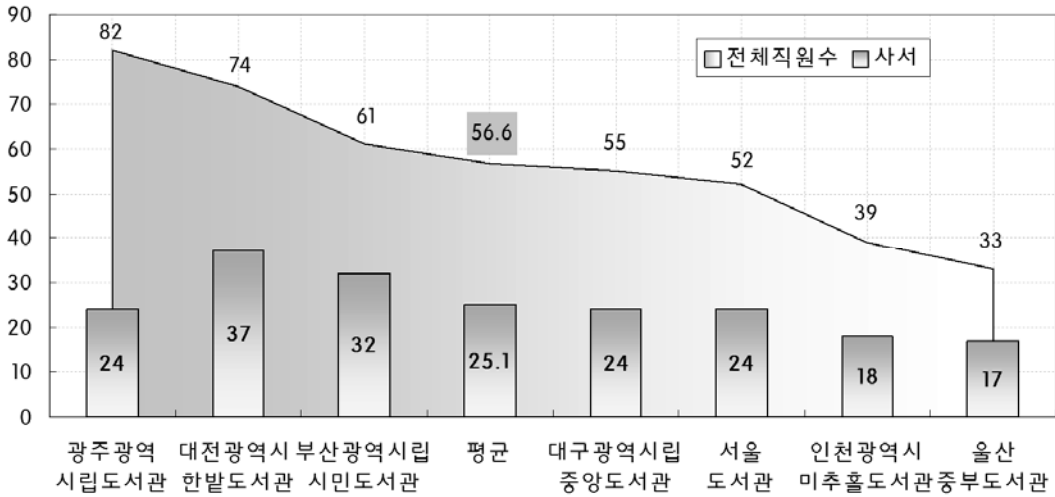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2014년말을 기준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지정 또는 설립·운영 중인 7개 지역대표도서관의 운영주체, 관장직급, 직원수, 조직구성 현황을 집계하면 <표 7>2) 및 <그림 3>과 같다. 즉, 관장직급은 3급(교육청 운영) 또는 4급(시 운영), 전체 직원수는 평균 56.6명(사서 25.1명), 조직단위는 평균 3개과 정도이다.

〈표 7〉 전국 특별·광역시 지역대표도서관의 인력 및 조직 현황

구분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주체	관장직급	직원수(사서)	조직현황	
					단위수	명칭
서울	서울도서관	서울시	4	52*(24)	3과	도서관정책과, 행정지원과, 정보서비스과
부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교육청	3	61(32)	1부 3과 1센터	도서관정책부, 총무과, 사서과, 열람과, 학부모지원센터
대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교육청	3	55(24)	4과	도서관정책과, 총무과, 문헌정보과, 열람봉사과
인천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인천시	4	39(18)	3부	정보정책부, 운영지원부, 문헌정보부
광주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광주시	4	82(24)	2과 2관	관리과, 문헌정보과, 사적도서관, 산수도서관
대전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대전시	4	74(37)	3과	관리과, 자료정책과, 자료운영과
울산	울산중부도서관	교육청	3	33(17)	3과	총무과, 사서과, 학교도서관지원협력과
평균				56.6(25.1)		

* 시간제, 기간임기제 공무원 14명 포함

2)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지역대표도서관장 회의,” (2015. 2. 25) (유인물)자료를 재편집함.



〈그림 3〉 주요 지역대표도서관의 전체직원수 및 사서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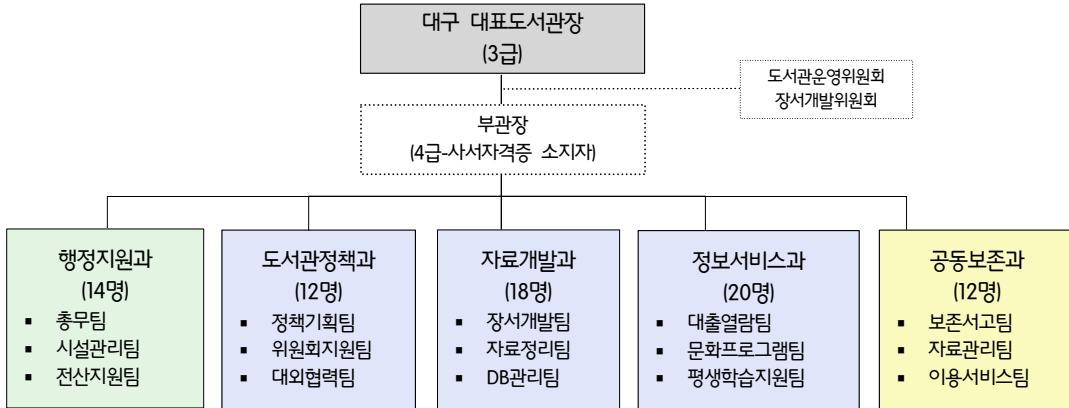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대표도서관의 인력 배치기준을 제시하면 서비스 대상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사서의 기본인력은 32명으로 책정하되 30만명 이상일 때는 초과하는 15만명당 사서 1명씩 증치하고, 기타 직원은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사서의 1/3을 추가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직무분석 연구(Yoon & Kim 2009, 541)에서 전문직(준전문직 포함) 업무 대비 비전문직 업무의 구성비율이 69.6% 대 30.4%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사서정원의 1/3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 이를 대구 대표도서관에 적용·제시하면 <표 8>과 같이 직원수는 총 76명[(사서 기본인력 32명 + 증원인력 14명) + 기타 직원 30명]으로 구성하고 관장직에는 3급(부이사관)을 보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직단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서 '과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과 평균 직원수를 15명 정도로 산정할 경우에 5개과로 <그림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8〉 대구 대표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구성 모형

서비스 대상인구 (2015년 2월말 기준)	인력구성					조직규모 (과단위수)
	사서			기타 직원 (사서의 % 적용)	전체 직원	
	기본인력	증원인력	소계			
2,492,583	32	14	46	30	76	5.0

산출근거 : 기본인력(사서 32명, 서비스 대상인구 30만명 기준) + 증원인력 14명(서비스 대상인구가 30만명 이상일 경우에 초과하는 15만명당 사서 1명 증치) + 기타 직원 30명(사서정원 46명의 1/3 추가)

3)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 개정안 연구(윤희운 2012)에서 밝힌 바 있음.



<그림 4> 대구 대표도서관의 조직도(안)

2. 지역도서관 연계협력 방안

대구 대표도서관은 앞서 <그림 2>에서 제안한 총 10가지 기능(대구시 공공도서관 정책(시책) 수립·추진·보고, 대구시 도서관(분관 포함) 설립·육성 및 지원, 도서관 자체 및 대구시의 종합적 장서개발 및 서비스, 대구시 공동보존서고 운영, 대구 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 및 상호대차 주도, 대구시 독서진흥-문화프로그램-평생학습 제공, 도서관 관련 조사연구실태조사-활동평가, 대구 도서관을 위한 각종 기관과의 협력·지원 주관, 대구시민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대구 도서관직원 및 자원봉사자 실무교육-세미나의 주관·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표 9> 대구 대표도서관의 기능수행 모형 중 연계협력 대상

대표도서관 기능	구분	단위도서관 (공공도서관) 기능	다른 도서관과의 연계협력 기능
• 대구시 공공도서관 정책(시책) 수립·추진·보고		■	□
• 대구시 도서관(분관 포함) 설립·육성 및 지원		■	□
• 도서관 자체 및 대구시의 종합적 장서개발 및 서비스		■	□
• 대구 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 및 상호대차 주도			■
• 대구시 공동보존서고 운영			■
• 대구시 독서진흥-문화프로그램-평생학습 제공		■	
• 도서관 관련 조사연구실태조사-활동평가		■	
• 대구 도서관을 위한 각종 기관과의 협력·지원 주관		■	□
• 대구시민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	
• 대구 도서관직원 및 자원봉사자 실무교육-세미나의 주관·지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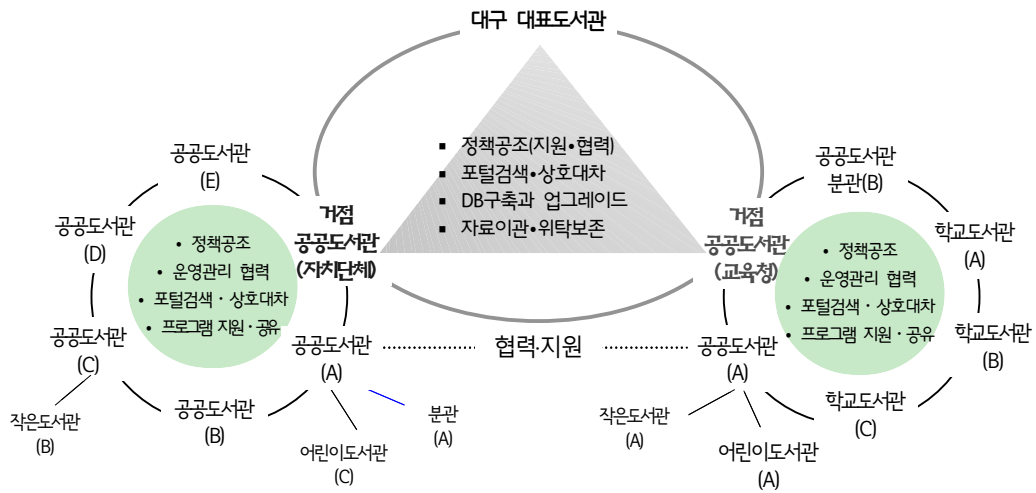
■ : 일종의 공공도서관 및 대구 대표도서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 기능
 □ : 대구 대표도서관으로서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추가적 기능

그 가운데 일종의 공공도서관, 즉 단위도서관으로서의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능과 대구 대표도서관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할 기능을 구분하면 <표 9>와 같다. 따라서 후자를 위해서는 지역도서관과의 연계·협력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운영

대구시에 산재하는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자체 장서개발과 보존관리를 전제로 서비스권역 내의 주민에게 자료서비스, 문화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시설공간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인적 및 물적 제약을 감안하면 미시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력시스템 구축과 상호협력을 통한 외연 확대가 중요하며, 대구 대표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대구 대표도서관의 지역도서관 연계협력 기능 중에서 요체는 지역 내 모든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주도하여 정책공조, 포털검색과 상호대차, 공동DB 구축, 자료이관 및 위탁보존 등이며, 이들을 아우르는 다양한 협력활동의 구심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중심의 연계협력시스템 구축모형을 제안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대구 대표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연계협력시스템 모형

다만, 공공도서관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 단계에서는 대구 대표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3조 제2호(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역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아우르는 협력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되,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을 거점형 양대 주체로 간주하여 삼각벨트를 형성하고 각각의 공공도서관에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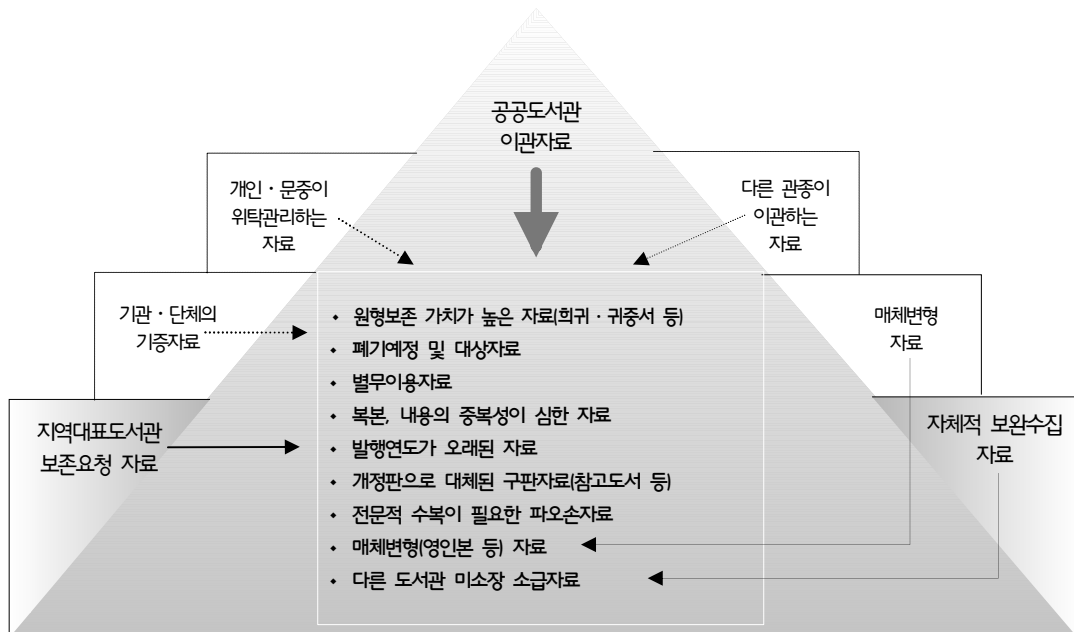
린이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대구시는 대구 대표도서관을 컨트롤 타워로, 기초자치단체별 거점도서관(자치구 중심도서관 또는 센터도서관)과 교육청 소속의 주요 공공도서관을 허브로, 나머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노드로 하고, 각각의 노드에 작은도서관과 분관 등을 연계시키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성격(공립과 사립) 및 운영주체(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교회 등)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원하되 거점도서관을 정점으로 서비스 권역별 공공·어린이도서관과 시스템적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법적 근거에 따라 ‘거점도서관 - 공공어린이도서관 - 작은도서관(분관·분실, 이동문고 등)’으로 체계화하여 기능적 분담과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거점도서관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아파트문고, 교회문고,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체계화한 공공도서관 시스템 내에서 고유한 정체성과 기능적 다양성을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공공도서관이 자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면 다른 시설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시설인 기록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과 수평적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대구 공동보존서고 구축을 위한 연계협력

대구시 공동보존서고에서 구축·관리해야 할 보존장서는 공공도서관이 이관하는 자료, 자체적으로 보완수집하는 자료, 지역대표도서관의 보존요청 자료, 매체변형 자료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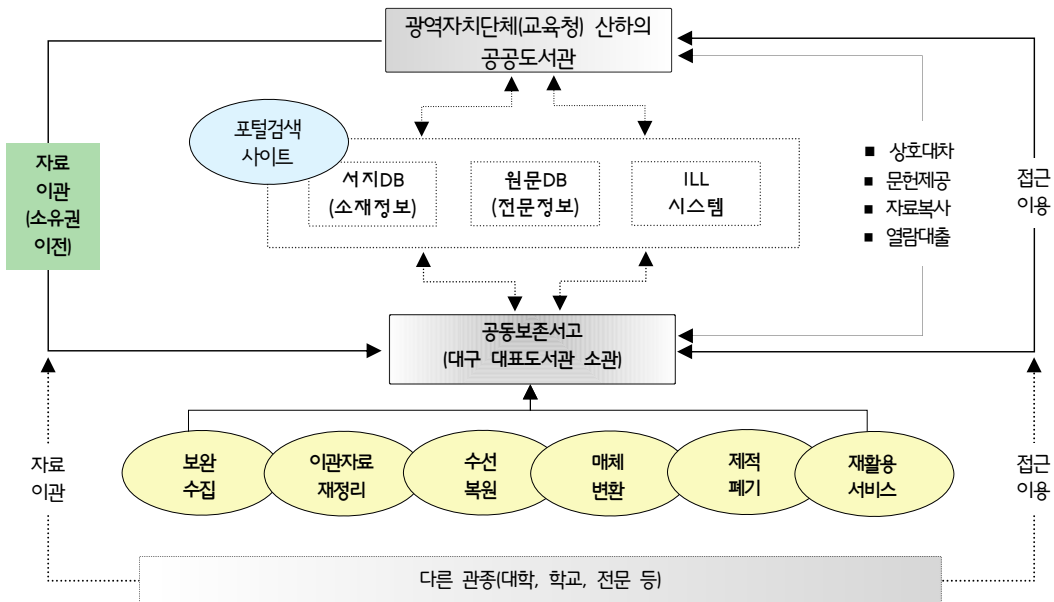


〈그림 6〉 대구 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장서구축 모형

된다. 그리고 증장기적으로는 개인·문중·기관단체 등의 기증이나 위탁관리 자료, 다른 관중이 이관할 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종을 차지하는 자료는 공공도서관 이관자료이며 지역대표도서관의 보존요청 자료, 자체 수집하는 자료, 위탁관리 자료의 순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중심으로 공동보존장서 구축모형을 이관수집 및 자체개발 수단 등과 연계하여 제안하면 <그림 6>과 같다.

대구 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운영의 당위성, 존재이유와 중요성, 당대의 지역장서 보존센터 및 후대를 위한 지식정보 타임캡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공공도서관 및 대구 대표도서관이 이관하는 자료의 보존관리와 다른 공공도서관이 소장하지 않는 소급형 자료의 보완적 수집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존장서를 구축하되, 바탕으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기증을 요청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다른 관중의 자료도 이관받아 보존하는 방향으로 보존장서의 외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구 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운영관리시스템 모형을 제안하면 <그림 6>과 같다.

대구 대표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운영관리시스템은 공공도서관의 자료이관을 출발점으로 삼아 작동하게 되므로 자료를 이관할 때 재정리, 수선복원, 디지털 아카이빙, 제적폐기를 수행하는데 따른 실무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소유권도 모두 대구 대표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동보존서고는 이관자료의 재정리, 파·오손자료의 수선·복원과 탈산처리,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의 열람대출, 원문제공, 상호대차를 위한 매체변환과 디지털 아카이빙, 다수 복본을 대상으로 보존할 자료를 선별하여 제적·폐기하고 이들을



<그림 7> 대구 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운영관리시스템 체계도

미소장 공공도서관에 다시 기증하여 재활용하는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자료를 선별할 때, 2007년 12월 6일자로 고시된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문화관광부고시 제 2007-37호)에서 규정한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자체 폐기과정을 거친 후에 나머지를 이관할 수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자체 폐기자료 가운데 공동보존서고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공공도서관이 저마다 폐기작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심리적 및 비용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도서관은 다수 복본을 제외하면 모두 이관하고 공동보존서고에서 연간 1회 정도로 집중 폐기작업을 진행할 때 공공도서관마다 폐기업무의 중복적 수행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대구 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관중(학교, 대학, 전문 등)의 자료도 이관받아 보존장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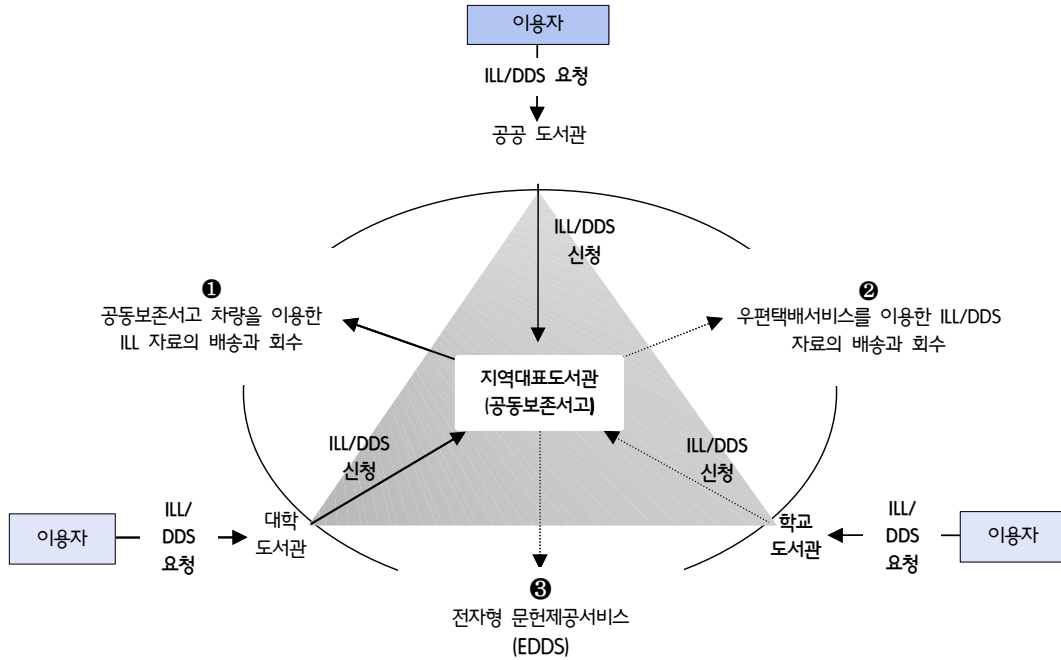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대구 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는 공공도서관 이관자료 기반의 중핵기능인 집중적 보존관리를 전제로 다른 도서관 및 이용자에게 부차적 내지 선택적 기능인 각종 접근이 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서비스 유형은 서지정보 검색지원서비스, 온라인 정보상담 및 질의응답서비스, 내방객을 위한 보존장서의 열람·대출서비스, 원격 이용자를 위한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다. 도서관 ILL/DDS를 위한 협력시스템

대구 대표도서관은 대구시에 존재하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관중을 위한 도서관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ILL/DDS)를 위한 컨트롤 타워 및 구심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시스템 모형은 <그림 8>과 같다.

대구 대표도서관의 ILL/DDS 모형은 대다수 이용자가 거주지 주변의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당해 도서관에 자료서비스를 요청하고 그 도서관은 대표도서관(공동보존서고)에 다시 요청하면 자체 차량, 우편택배서비스, 전자형 문헌제공서비스(EDDS)를 통하여 신청한 도서관에 전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때 배송 및 회수수단으로 대표도서관(공동보존서고) 순회차량을 활용하는 방안은 요청건수가 많고 여러 도서관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에 유리한 반면에 우편택배서비스는 요청건수나 배송처의 입지조건과 무관하며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대표도서관(공동보존서고) 차량을 통한 배송과 회수를 기본수단으로 하고 우편택배서비스로 보완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한편, 도서관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대표도서관(공동보존서고)은 신청한 도서관과 수수료를 정산하고 당해 도서관은 요청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애인에게는 무료택배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8> 대구 대표도서관(공동보존서고)의 ILL/DDS 모형

IV. 요약 및 결론

모든 시도는 「도서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을 대구시 지식문화 랜드마크화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대구 대표도서관의 운영조직 모형 및 연계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 대표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은 지역대표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장의 법정 업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법정 업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추가적 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10가지(대구시 공공도서관 정책(시책) 수립·추진·보고, 대구시 도서관(분관 포함) 설립·육성 및 지원, 도서관 자체 및 대구시의 종합적 장서개발 및 서비스, 대구시 공동보존서고 운영, 대구 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 및 상호대차 주도, 대구시 독서진흥, 문화프로그램, 평생학습 제공, 도서관 관련 조사연구, 실태조사, 활동평가, 대구 도서관을 위한 각종 기관과의 협력·지원 주관, 대구시민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대구 도서관직원 및 자원봉사자 실무교육, 세미나의 주관·지원)로 제안하였다.

둘째, 인력구성의 경우, 기본인력(사서 32명, 서비스 대상인구 30만명 기준) + 증원인력 14명(서비스 대상인구가 30만명 이상일 경우에 초과하는 15만명당 사서 1명 증치) + 기타 직원 30명

(사서정원 46명의 $\frac{2}{3}$ 추가) 등 총 76명으로 구성하고, 관장직에는 3급(부이사관)을 보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조직구성인 경우, 총 인원수 76명을 대상으로 ‘과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1개과당 평균 15명 정도로 산정하되,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법정 업무 및 주요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총 5개과(행정지원과, 도서관정책과, 자료개발과, 정보서비스과, 공동보존과)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구 대표도서관 및 지역도서관의 연계협력 구축은 공공도서관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운영, 대구 공동보존서고 구축을 위한 연계협력, 도서관 ILL/DDS를 위한 협력시스템으로 나누어 각각 콘트롤 타워 및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김세훈, 심효정. 2008.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1): 319-337.
- 대구광역시. 2015.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대구: 대구광역시.
- 부산광역시. 2014. 『부산 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부산: 부산광역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서울: 동기관.
- 울산광역시. 2013. 『울산광역시 시립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울산: 울산광역시.
- 윤희윤. 2006. 국가도서관 지역분관 건립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11-34.
- 윤희윤. 2012.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 개정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55-76.
- 한국도서관협회. 2008.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연구』. 수원: 경기도.
- 한국도서관협회. 2010.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편. 2013.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동협회.
- Yoon, Hee-Yoon and Sin-Young Kim. 2009. "A Study on the Job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Aslib Proceedings*, 61(2): 504-541.
- 東京道立図書館 홈페이지 <<http://www.library.metro.tokyo.jp/>>
- 北海道立図書館 홈페이지 <<http://www.library.pref.hokkaido.jp/>>
- 北海道立図書館, 北海道立図書館運営計劃 <<http://www.library.pref.hokkaido.jp/web/publish/qulnh000000006t9-att/vmlvna0000000muk.pdf>>
- 大阪府立中央図書館. 2014. 大阪府立中央図書館要覧 <<http://www.library.pref.osaka.jp/site/yoran/yoran-2014-yoranc-gaiyo.html>>
- 大阪府立中央図書館 홈페이지 <<http://www.library.pref.osaka.jp/central/english.html>>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usan Metropolitan City. 2014. *A Master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usan Central Library*. Busan: Busan Metropolitan City.
- Daegu Metropolitan City. 2015. *A Master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aegu Central Library*. Daegu: Daegu Metropolitan City.
- Kim, Se Hun, Hyo Jung Shim. 2008.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1): 319-337.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8. *A Master plan for the management of the Gyeonggi Province regional central Library*. Suwon: Gyeonggi Province.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A Study on the Revision of Korean Library Standards*.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2013 Korean Library Standard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08. *A Master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 Library*. Seoul: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Ulsan Metropolitan City. 2013. *A Master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lsan Central Library*. Ulsan: Ulsan Metropolitan City.
- Yoon, Hee Yoon. 2006. "A Study on the Branch Establishment Planning of Nation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3): 11-34.
- Yoon, Hee Yoon. 2012. "A Study on the Revision of Staffing Standards for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1): 55-76.